

- 라. **서류전형** :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.
- 마. **면접시험** :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발전가능성,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적성검사(10점), 면접평가(10점), 가산점(5점)을 합산하여 **총점(25점)**의 40% 이상(10점)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- ※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시 불합격처리

7. 시험 가산점

가. 취업지원대상자

- 1)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가족은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% 또는 5%를 가산합니다.
- ※ 취업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2)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3)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신 후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가산점만 인정됩니다.
- ※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 (☎1577-0606)

나.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

- 1)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」별표4(별첨)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2) 응시자격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,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.
- 3) 어학능력 자격증은 **최종시험예정일(8.24.)을 기준으로 2년 이내** 것만 인정됩니다.
- 4) 가산 자격증은 원서접수시 원서접수사이트에 입력하고 **적성검사일까지 사본을 제출 바랍니다.**
- ※ **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한 자격증 중 최종시험예정일(8.24.)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만 가산점으로 인정됩니다.**

8. 최종합격자 결정 : 필기시험(50%), 체력검사(25%), 면접시험(25%)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
- * 관련근거 :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33조(시험의 합격결정)」 제3항1호
- ※ 최종합격자는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(임용 또는 임용제정의 유예)」에 따라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.(최종합격자 발표 시 상세안내)

9. 교육 및 임용

- 가. 교육 : 2021년 10월 23일(토) 해양경찰교육원 입교(예정)
- ※ 교육원 입교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안내는 추후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할 예정입니다.
- ※ 교육입교를 하지 않거나 임용이 불가한 경우,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.
(관련근거 :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19조(채용 후보자의 자격상실))
- 나. 임용 : 최종합격자는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신임교육과정 평가 성적순으로 근무예정지에서 임용
- ※ **최초 임용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다른 지방해양경찰청으로 10년 간 전보가 제한됩니다.**

10. 제출서류

- 가.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.
- 나.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, 필요시 추가(보완)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※ 제출 서류의 입장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,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이 불가합니다.

11. 유의사항

- 가.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,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나. 합격자 발표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신원 조사 등 경찰공무원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다. **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소명서류(응시연령, 가산점, 자격 등)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38조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**
※ 금지악물 및 금지방법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-1호 참조
- 라.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**응시표와 신분증 원본**(주민등록증,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, 운전면허증, 여권)을 소지하여야 하며 **응시표,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** 아울러, 위에 열거한 신분증 외 학생증,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마. 모든 시험은 응시한 지방해양경찰청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중복 응시는 불가합니다.
- 바.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『채용공고』 또는 원서접수 사이트(<http://gosi.kcg.go.kr>)에 게재 예정이며, 응시자는 시험시간, 장소,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꼭히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※ **공지사항을 열람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**
- 사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주기적으로 인터넷 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선되는 공지사항을 꼭히 확인해야 합니다.
- ※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지 예정입니다.
- 아. 색약(약도)자의 경우 경찰병원, 종합병원 또는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(색각경)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**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서**를 서류 제출 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자. 응시대상자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야별로 예정된 채용 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- 차.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*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※ 최종합격 이후 정해진 기간 내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시행규칙」[별지 제9호]에 따른 「채용후보자 등록원서」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17조(채용후보자의 등록) 제2항에 따라 **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**
- 카. **해양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·장소에 늦게 도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, 반드시 시간을 염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- 타.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▷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▷
- 인사혁신처(www.mpmgo.kr) - 참여민원 - 신고센터 - 인사신문고 -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
- 파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하신 지방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중부지방해양경찰청 : ☎032-728-8716, 8916
서해지방해양경찰청 : ☎061-288-2416, 2521
남해지방해양경찰청 : ☎051-663-2416, 2616
동해지방해양경찰청 : ☎033-680-2416, 2716
제주지방해양경찰청 : ☎064-801-2416, 2221